##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서영석・김한규・이성윤

민병덕 • 문진석 • 박희승

강준현 • 이건태 • 이정문

조승래 • 정준호 • 김기표

이해식 • 양부남 • 이연희

박홍배 • 이재관 • 서영교

홍기원 · 김태년 · 전진숙

서미화 · 오세희 · 윤건영

임광현 의원(2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로당의 운영비는 늘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인구구조의 변화에따라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되면서 경로당의 운영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점심식 사 제공 등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 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법률 제 호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보조할 수 있다"를 각각 "보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
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입비 등의 보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양	
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	
곡을 포함한다)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u>보조할 수 있다</u> .	<u>보조하여야 한다</u>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②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	
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u>보</u>	
조할 수 있다.	조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조하여야 한다.